

1. 개정이유

2012년부터 철도 사고·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철도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여 철도운영사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적정 수행 여부 점검, 철도현장 시설관리실태 등의 안전 점검 및 사고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나,

철도안전감독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그간 마련한 책임감독관제 도입 및 직무교육 정례화 등을 이행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철도사고·장애 책임 대응을 위한 '책임감독관'의 용어를 정의(안 제3조)하고, 책임감독관의 주요 업무를 규정(안 제7조)

나. 감독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연1회 20시간 이상 직무교육을 이수토록 규정(안 제5조)

다. 감독관별 처분 수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처분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14조의2)

라. 기타 자구체계 현행화 수정(안 제9조·제15조·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철도안전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